

신청번호 :

발급번호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핏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매 출 액 : 억원 (소프트웨어분야 매출액 : 억원)
 - 상시종업원수 : 명 (소프트웨어기술자 : 명)
 - 확인일자 : 2026-10-02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사업분야 :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
- ※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10 월 02 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유의사항

- 최근 결산 자료로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8.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이 "확인불가"로 명시됩니다.
- 관리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같은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10mmX297mm [백상지 80g/m²]

조달청 입찰참가용

원본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오니 공공SW입찰 등 제출시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www.swit.or.kr>)의 '증명서위변조 확인' 메뉴에서 열람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유의사항

1.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관한지침”에 의해 기재되는 금액이며, 대기업의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대기업은 전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8천억 이상이면 80억, 8천억 미만이면 40억이며 중소기업은 "없음"입니다.

대,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독립성 기준 등 수행기관에서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업은 대,중소기업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공공사업입찰참여금액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행기관에 정정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상이한 확인서를 입찰 등에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청 안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은 관련규정에 의해 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결산 완료된 매출액과 상시종업원수 또한 신청하셔야 하며, 이 자료를 근거로 공공사업 입찰참여금액을 갱신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변경신청하지 않은 확인서를 입찰 참여시 입찰서류 미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소프트웨어사업 이행보증 안내

소프트웨어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은 소프트웨어진흥법 61조에 따라 설립된 SW사업 보증전담기관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문의 : 02-2141-7823~24)

4. 소프트웨어사업자 권익보호 및 애로사항 상담

소프트웨어진흥법 1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권익보호와 SW사업 입찰, 수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02-2188-6967)